

(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-참조30)

#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윤혜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5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: 2023년 5월 일

발 의 자: 윤혜선, 이군수, 김선임, 강상태,  
이준배, 서은경, 최종성, 안광림,  
박경희, 김윤환, 정연화, 박기범,  
성해련, 최현백, 서희경, 안극수,  
황금석, 이영경, 추선미, 박주윤  
(이상 20명)

개정 구분 : 일부개정

개정 이유

- 성남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 및 유지에 필요한 헌혈 권장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헌혈자 중심 인프라 개선 및 참여기회를 마련하고자 함.

주요 내용

- 가. 헌혈 장소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나. 헌혈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다. 헌혈의 달 지정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개정 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

-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, 제4조의3
-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, 제2조의3

## 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남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제1조** 중 “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”을 “성남시가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시민”으로 한다.

**제2조제1호** 중 “제4조제1항과 「혈액관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”을 “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및 제2호 중 “주민”을 각각 “시민”으로 한다.

**제3조** 중 “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**제4조제1항** 중 “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5조(사후관리)부터 제13조(수당 등)까지를 각각 제8조(사후관리)부터 제16조(수당 등)까지로 하며, 제5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**제5조(헌혈장소 설치 지원)** 시장은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성남시청 및 산하 보건소, 도서관 등 공공장소
2. 성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 사업소
3.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·운영하는 장소
4. 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

제7조(헌혈의 달 지정·운영)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제14조(관련정보의 제공) 를 제6조로 한다.

제6조(관련정보의 제공)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
2.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
3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
4.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.

제9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제1항 중 “주민”을 “시민”으로 한다.

제15조(비밀준수의 의무) 를 제17조로 한다.

제16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혈액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헌혈권장활동”이란 「<u>혈액관리법</u>」 제4조제1항과 「<u>혈액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“헌혈장려”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<u>주민</u>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,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성남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<u>주민</u>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성남시가</u> 「<u>혈액관리법 시행령</u>」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<u>시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<u>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</u>-----</p> <p>----- <u>시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-----</p> <p>----- <u>시민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시민</u>-----</p> <p>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헌혈장려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<u>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</u>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5조 (생략)</p> <p>제6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<u>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</u>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헌혈장려계획의 수립) ① -----  <u>시민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조(헌혈장소 설치 지원) 시장은 <u>대한적십자사혈액원 또는 한마음혈액원이</u>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성남시청 및 산하 보건소, 도서관 등 공공장소</u></li> <li>2. <u>성남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산하 사업소</u></li> <li>3. <u>시 투자기관에서 관리·운영하는 장소</u></li> <li>4. <u>그 밖에 헌혈장소를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</u></li> </ol> <p>제8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</p> <p>제9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 -----  ----- <u>시민</u>-----  -----  ----- 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~ ④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제7조 ~ 제13조</u> (생략)</p> <p><u>제14조(관련정보의 제공) &lt;신설&gt;</u></p> <p>(생략)</p> <p><u>제15조(생략)</u></p> <p><u>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&lt;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.10.25.&gt;</u></p>	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7조(헌혈의 달 지정·운영)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제10조 ~ 제16조</u> (현행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)</p> <p><u>제6조(관련정보의 제공) ① 시장은 헌혈 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</u></li> <li><u>2.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</u></li> <li><u>3.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</u></li> <li><u>4.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</u></li> </ol> <p><u>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u></p> <p><u>제17조(현행 제15조와 같음)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

### 【 혈액관리법 】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4조의3(헌혈 권장 등)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【 혈액관리법 시행령 】

제2조(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) ① 「혈액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국가헌혈협의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으로 한다.

③ 국가헌혈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3급 공무원,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

2. 교육부

3. 국방부

4. 행정안전부

5. 국무조정실
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

제2조의3(헌혈의 권장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혈액의 수급조절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권장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,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혈액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공공단체·민간단체 또는 혈액원에 대하여 헌혈권장 등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을 위하여 헌혈의 날 또는 헌혈사상 고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것을 상신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.